#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19 발의년월일 : 2010년 8월 2일

**번 호** 발 의 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주 문

가. 현행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들에게 국한하여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서울시 초·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나.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-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바, 초·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음.
-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헌법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도 상반됨.

○ 이에 안전하고 영양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학교생활을 도모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참고사항

- 헌법 제31조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
-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 제10조

#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헌법 제31조제3항은 "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"고 규정하고 있는 바, 학교급식 또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속하여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 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.
- 현재 서울시는 경제상황의 불안으로 결식아동이 나날이 증가하며 급식비 미납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바,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해당 학생에게는 가난을 입증하는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리적 상처를 줄 우려가 높다.
-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자라나는 초.중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활력이 넘치는 학교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하여 '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 위원회'의 구성을 결의한다.

2010. 8. 2 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